

유네스코한국위원회운영규칙

제정 2007. 9. 9

개정 2008. 11. 12

개정 2010. 4. 30

개정 2011. 7. 12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“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”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위원회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4.30>

제2장 위원 위촉

제3조 (위원 후보 선정)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심의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후보를 선정한다.

1.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·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를 후보로 한다.
2.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동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과 위원회 사무총장(이하 “사무총장”이라 한다)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전문가를 후보로 한다.
3. 법 제1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후보로 한다.

②그 밖에 위원 후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4조 <삭제 2010.4.30>

제5조 (위원 위촉 심의) ①집행위원회 위원은 위원 후보가 본인이거나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 후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.

②그 밖에 위원 위촉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3장 총회 · 집행위원회

제6조 (총회의 소집)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총회는 4월중에 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의안과 함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위원이 총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 (위임·대리) ①위원(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다)은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은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1.7.12>

②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위원장과 동조동항 제1호·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2>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를 위임하였거나 대리인을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총회의 의결 등) ①총회의 의결은 과반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.

②총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총회에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 (총회 회의록) ①사무총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 및 총회에 출석한 관계자에게 송부하되, 출석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의록을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내용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회의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집행위원회의 운영) ①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총회”는 “집행위원회”, “위원”은 “집행위원”으로 본다.

②집행위원회는 그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차기 집행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집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중 법에서 총회의 기능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는 가장 가까운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분과위원회·전문위원회

제11조 (분과위원회의 설치·구성)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분과위원회
2. 자연과학분과위원회

3.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회

4. 문화분과위원회

5.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위원회

②위원(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다)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 분과위원회에 속하되, 그 배속은 위원장이 한다.

③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른다.

④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,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⑤사무총장은 분과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,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2조 (분과위원회의 기능)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각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기획 및 토의
2. 총회·집행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
3. 위원장·사무총장이 요청하는 사항
4.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3조 (분과위원회의 소집·운영 등) ①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11.7.12>

④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총회”는 “분과위원회”, “위원”은 “분과위원회 위원”으로 본다. <신설 2011.7.12>

제14조 (전문위원회의 설치·구성·운영) ①법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②각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및 각 전문위원회의 설치목적·구성·기능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③사무총장은 전문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,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④전문위원회는 매년 그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7.12>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15조 (운영재원) ①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위원회 재산의 운용에서 나오는 과실 및 수익금
2. 정부의 지원금
3. 유네스코 등 관련 국제기구 및 기관·단체의 지원금
4. 사업 수입

5. 기부금

6. 차입금

7. 기타 수입금

②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6조 (재산의 구분) ①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기본재산은 유네스코회관 등 제35조에 따른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으로 하며,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17조 (재산의 관리) ①위원회의 재산은 사무총장이 관리한다.

②기본재산을 취득·이관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사무총장은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 (회계) ①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위원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.

③개별 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정 또는 폐지한다.

제19조 (예산 및 결산)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1.12>

제20조 (재정 및 회계에 관한 규정) 그 밖에 위원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장 감사

제21조 (감사 대상 업무) ①법 제14조에 따른 감사(監査)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재정과 회계 업무
2. 위원회 사무처(이하 “사무처”라 한다)의 운영과 그 업무
3.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·사무총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

②집행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사(監事) 2인에게 그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제1항의 감사(監査) 업무를 배분한다.

③감사 2인 중 어느 한 사람의 유고 시에는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나머지 감사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 (감사의 실시) ①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.

②감사는 정기감사·특별감사로 구분한다.

③위원회는 감사(監査)에 성실하게 협조하고,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.

④사무총장은 감사(監事)의 직무수행과 감사(監査)의 실시에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⑤그 밖에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장 사무총장 임명

제23조 (사무총장 후보의 추천) 집행위원회는 2인 이상의 사무총장 후보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.

제24조 (사무총장 후보의 모집 및 심사) ①집행위원회는 공개 모집 및 사무총장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3조에 따른 사무총장 후보를 선정한다.

②사무총장후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,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위원 3인 및 사무처 직원(사무총장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대표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.

③공개모집의 방법·절차, 사무총장 후보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8장 사무처

제25조 (사무총장의 직무) ①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,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다.

③사무총장의 유고시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6조 (사무처 운영)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.

1. 사무총장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
2.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

제27조 (사무처 조직) 사무총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에 부서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28조 (인사위원회) 사무처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,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.

제29조 (직원의 임용) ①직원은 사무총장이 임용(채용·승진·전직·전보·겸임·파견·휴직·대기·정직·복직·면직을 말한다)한다.

②직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. 다만, 직무·사업의 특수성, 인사관리상 필요성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제30조 (직원의 퇴직·면직) 직원의 퇴직 또는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른 퇴직과 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당연 퇴직
2. 자진 퇴직(명예퇴직·조기퇴직을 제외한다)

3. 직권 면직

제31조 (직원의 신분보장) 직원은 형의 선고·징계처분 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·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32조 (사무총장·직원의 보수) ①사무총장 및 직원의 보수는 직무의 성격·책임 및 성과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.

②사무총장 및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.

제33조 (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) 그 밖에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9장 기타

제34조 (실비의 지급) 사무총장 이외의 위원·전문위원회 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30>

제35조 (운영규정)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<2007.8.24 제6차 임시총회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운영규칙의 폐지) 종전의 위원회 운영규칙 제1호「회의규정」, 제2호「직제규정」, 제3호「인사규정」, 제4호「복무규정」, 제5호「급여규정」, 제6호「국내출장여비지급규정」, 제7호「국외출장여비규정」, 제8호「회계규정」, 제9호「기금관리규정」은 이 규칙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 (운영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 운영규칙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항 중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조항은 제35조에 따른 운영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35조에 따른 운영규정의 조항으로 본다.

부 칙 <2008.11.12 제57차 정기총회>

이 규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4.30 제59차 정기총회>

이 규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6.30 제60차 정기총회>

이 규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유네스코한국위원회운영규칙